

강사료지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전임교원의 강의 책임시수(이하 책임시수) 및 강사와 비전임교원의 강의시간, 그리고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강의의 구분)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특수강의는 실험·실습 수업, 졸업논문지도, 바롬인성교육 등을 말한다.
- ② 보통강의는 ①항 이외의 일반 수업을 말한다.
- ③ 특별강의는 국내외의 저명인사의 수업을 말한다.
- ④ 초과강의는 전임교원이 책임시수를 초과하여 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
- ⑤ 시간강의는 강사가 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 (주당 책임시수) ① 정년제 전임교원의 학기별 주당 책임시수는 9시수를 원칙으로 하며, 연간 책임시수는 18시수로 한다. 시수는 학점수를 의미한다. 다만, 강의시간과 학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교과목의 시수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계약제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보직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각 교원의 정해진 책임시수에서 다음의 시수를 경감한 것으로 한다.

1. 대학원장, 학장, 처장 - 6시수
2. 산학협력단장 - 5시수
3. 아트앤디자인스쿨학부장 - 4시수
4. 교육혁신단장, 박물관장, 도서관장, 학부장, 실장, 부속교육원장, 학보사주간, 방송국주간, 국제교류단장, 평생교육원장, 국책사업단장, 정보전산원장, 교양교육부장, 바롬인성교육부장 - 3시수
5.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책임교수, 연구소장, 에코캠퍼스추진사업단장, 교수사정관, 교수·학습센터장,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장, 사회봉사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SI교육센터장, 교직지원센터장, 인권센터장 - 2시수
6. 연계융합전공주임교수 - 1시수

④ 기타 보직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전임교원의 담당시간은 연간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학기별 최소 1과목 이상 강의해야 한다. 연간적용(학년도 내에서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2 이상의 보직을 담당한 교원의 책임시수 적용은 보다 적은 시수로 한다.

제3조의2 (비전임교원의 강의시간) 비전임교원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은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4조 (강의시수의 제한) 강의시수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전임교원은 주당 책임시수의 2배를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 다만 졸업논문, 작품 및 실기 발표지도는 예외로 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삭제>
- ⑥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대학원 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1명일 경우, 강의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⑦ 전 ①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전임교원은 책임시수의 2배를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다.

제5조 (강사료의 지급) ①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초과강사료는 책임시수를 초과하여 강의하는 전임교원에게 제6조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되, 지급우선순위는 강사료 단가가 높은 순으로 지급한다.
2. 시간강사료는 강의를 담당한 강사에게 제6조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며, 방학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계절학기 강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강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하되 관련 규정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③ 비상재해 등 긴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동조 제①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업기간 중 강사가 담당하는 시간은 강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의2 (강사료 지급의 제한) ① 전임교원이 제4조의 1항을 위배하여 강의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초과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강인원 과다로 배수 처리한 시수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③ 전임교원이 책임시수 미달분을 보충하는 경우, 그 보충에 해당되는 시수에 대해 초과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대학원 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1명일 경우, 초과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전 ①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을 경우, 초과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강사료의 계산) ① 강사료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초과강사료는 시수로 계산하고, 강사 및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과강사료 계산 시, 학점수보다 강의시간이 많은 교과목의 경우에 학점수를 초과하는 강의시간 1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
2. 수강인원 증가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강사료는 [별표1]과 같다.
3. <삭제>
4. 수강과목 중도포기로 인하여 감원된 경우, 최종 수강인원에 따라 지급한다.
- ② 강사료는 “주당시수(또는 시간) × 학기당 강의주수” 로 계산한다.
- ③ 학기초 또는 학기말에는 주 미만을 1주로 계산할 수 있다.

제6조의2 (팀티칭 강사료 계산) ① 전임교원의 팀티칭 강의시수는 “강의담당주수 ÷ 학기당 수업주수” 로 계산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강사가 담당하는 팀티칭 강의의 강사료는 강의담당주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강사료 지급 기준액) ① 제2조에 따르는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증액할 수 있다.

1. 국내외 저명인사의 특별강의 강사료
2. 강의 출강하기 위하여 숙박을 요하는 경우는 시간강사료외 숙박 및 교통비의 실비를 지급한다.

② 강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 기준액을 구분한다.

1. 특급 : 1~2급 해당자 중 총장이 따로 정하는 자
2. 1급 : 4년제 대학 전임교원 및 명예교수, 박사학위소지자, 외국인강사, 석사학위 소지자 중 강의경력 8년 이상인 자
3. 2급 : 강의경력 8년 미만의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4. <삭제>

제7조의2 (강의경력 산정) ① 제7조 2항의 2호에 해당하는 강의경력은 대학, 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의 강의경력에 한한다.

② 예체능계의 경우 담당과목과 관련된 산업체 근무경력의 70%를 강의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산업체의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강사료 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제 강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시간
2. 기타 학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할 때
3. 등록기간

제9조 (강사료 지급일) 강사료는 특별강사료를 제외하고는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예우) 만 64세 이상의 정년제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학기당 책임시수를 6시수로 하고 초과강의에 따른 강사료는 제3조의 연간 책임시수 초과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다만 수강인원 과다로 배수처리한 시수와 교양과목을 담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평생교육원 시수인정) ① 전임교원이 평생교육원 수업을 담당할 경우 연간 최대 5학점까지 시수 인정 할 수 있다. 단, 시수 인정 시에는 평생교육원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 3조, 4조, 5조, 6조, 7조 개정 <'98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면개정 <'99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④번 개정 <'00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개정, 제3조의2, 제7조의2, [별표1] 신설 <'03 제4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개정 <'04 제2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2조 제4항,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1항 개정, 동조 제5항 신설, 제5조 제1항 개정, 동조 제2항 신설, 제5조의2 제1항, 동조 제2항 개정, 동조 제4항 신설, 제6조 제3항 삭제, 제6조의2 제1항 개정, 제7조 제3호 개정 <2006학년도 제2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2항 2호 및 3호, 제3조 제4항 및 제5항, 제3조의2 2호, 제4조 제4항, 제5조 제2항, 제5조의2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개정 <'07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②항 개정 <'09 제22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개정, 동조 제4호 삭제 <2010 제24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개정 <2010 제24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항 및 제4항, 제6조 제1항 제1호 개정 <2010 제24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동조제2항내 지제5항을 제3항내지제6항으로 변경, 동조제2항 신설 <2011 제2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11 제1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6항 신설, 제10조 개정 <2013 제1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0조 개정 <2014 제22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5조의2 개정 <2015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 신설 <2015 제12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 신설 <2015 제12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1항 개정 <2015 제22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3항, 제3조의2 개정 <2017 제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2항 개정 <2018 제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3항 개정 <2018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제4호 개정, 제4조제6항 개정, 제5조의2제4항 개정, 제5조의2제5항 신설,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제10조 개정 <2018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2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3조의2 개정, 제3조의2 제1호, 제2호, 제5호 삭제, 제4조 개정,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삭제, 제4조 제6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5조의2 제1항 개정, 제5조의2 제2항 삭제, 제5조의2 제3항 내지 제4항, 제5항,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제6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 제7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3호, 제7조의2 제1항 개정 <2019 제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7항 신설, 제5조 제1항 제2호 개정 <2019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3항 제4호 개정 <2020 제1차 교무위원회>)
(주당 책임시수 경감에 대한 적용례) 제3조 제3항 제4호 인권센터장의 책임시수 경감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인권센터장으로 보직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 개정, 제6호 신설 <2020 제3차 교무위원회>)
(주당 책임시수 경감에 대한 적용례) 제3조 제3항 제3호 아트앤디자인스쿨학부장의 책임시수 경감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아트앤디자인스쿨학부장으로 보직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3항 제4호, 제10조 개정 <2020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3항 제4호 개정 <2020 제16차 교무위원회>)

〔별표1〕 수강인원 증가에 따른 강사료 초과수당

수강인원	초과수당
80~119명	시간당 강사료의 1.2배
120~139명	시간당 강사료의 1.4배
140~159명	시간당 강사료의 1.6배
160~179명	시간당 강사료의 1.8배
180~199명	시간당 강사료의 2.0배
200~219명	시간당 강사료의 2.2배
220~239명	시간당 강사료의 2.4배
240~259명	시간당 강사료의 2.6배
260~279명	시간당 강사료의 2.8배
280~299명	시간당 강사료의 3.0배
300명 이상	시간당 강사료의 3.2배